

CONTACT



원장 최석영

T: 02.6386.6620
E: seokyoung.choi@leeko.com



고문 임채민

T: 02.6386.6630
E: chemin.rim@leeko.com



고문 이태호

T: 02.772.4396
E: taeho.lee@leeko.com



변호사 박정현

T: 02.6386.6649
E: junghyun.park@leeko.com



연구위원 허난이

T: 02.6386.6451
E: nyhur@leeko.com



연구원 김사라

T: 02.6386.6560
E: sara.kim@leeko.com

2026년 미국의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 한국의 통상 리스크와 대응방향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 국가의 무역장벽을 14개 범주에 걸쳐 열거하는 동시에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에서의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이후 복수의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RTs) 성과를 공식 문서화하는 한편, 비시장적 정책·관행(NMPPs), 관세회피 대응 비협조 등 구조적·전략적 차원의 새로운 쟁점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금년도 보고서의 한국 관련 추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통상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1. 개관

2026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하였다.¹⁾ 동 보고서는 내용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다수의 교역상대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RTs,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의 이행 사항과 그 성과를 상세히 부각하고 분량도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예년에 제기했던 디지털 무역 제한 조치, 위생·검역 요건, 자동차 안전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도 광범위하게 열거하였다.

또한 비시장적 정책·관행(NMPPs,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강제노동, 관세회피 비협조(Non-Cooperation on Duty Evasion) 등 항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NMPPs관련 특정 산업에 대한 지배 전략, 국산품 우선구매 압박, 주요 산업 분야의 과잉생산능력 유지, 규제 당국의 차별적 규제,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실효적 대응 미흡 등을 해당 항목의 세부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신규 이슈들이 추가되었다. 현재 생산과잉과 강제노동관련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중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²⁾

2. 한국 관련 보고서 요지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은 기술장벽(포장, 라벨링), 위생·검역(GMO, 쇠고기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망사용료, 위치기반 데이터, 개인정보 해외이전, 클라우드 등), 투자, 정부조달(암호화, 클라우드 보안, 국방절충교역 등)에 대해서는 예년보고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비시장정책, 강제노동, 관세회피 대응, 부가가치세(VAT) 관련 지적과 쌀·대두 관세할당(TRQ), AI 인프라 정부조달 문제 등을 새롭게 추가한 바, 이하에서는 금년 NTE 보고서가 새롭게 지적한 사항 위주로 정리한다.

한미 무역투자 합의

작년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합의관련 공동 팩트 시트에 따라 3,500억불 상당의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 해소, 불필요한 규제조치 제거, 농업생명 공학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한국의 약속과 일부 성과를 기재했다.

수입정책

한국의 MFN 양허 및 실행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농산물 관세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산 쌀에 대한 국별 쿼터(CSQ) 운영의 불투명성과 미국산 밥쌀용 쌀 경매의 빈번한 중단 사례를 언급하고, 한국의 대두 수입 쿼터 축소로 인해 미국산 대두의 대한국 수출이 현저히 감소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한국이 수출품에 대해 10%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디지털분야 조달규제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보안인증 제도(CSAP)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시장 접근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면서, 국가정보원이 도입 추진중인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른 국가망 보안체계(N2SF)가 여전히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칩 및 추가적인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입찰을 국내 입찰자에게만 허용한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디지털 서비스 규제

2025년말 현재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위치기반 데이터의 수출 제한을 지적하고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한국 내 시스템에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차별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국회가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기회 제공 등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였다.

비시장 정책 및 관행

한국이 NMPPs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NMPP로 인한 시장 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담은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철강 분야 글로벌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철강과잉능력 글로벌 포럼에는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노동과 환경

미국이 노동권 보호에 관한 한국 법과 집행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작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태평양연안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을 근거로 수입 보류 명령(WRO)을 발동했다는 사실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불공정 경쟁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관세회피비협조

한국이 미국과 관세회피 협력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한국 경유 제3국의 고위험 화물 선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등 관세회피 대응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시사점과 대응방향

평가와 시사점

2026년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통상정책 방향과 이행실적을 강조하고 작년 미국 해방의 날(4월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체결한 양자간 무역·투자 합의 요지와 성과를 부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예년의 NTE 보고서가 비시장 경제체제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반면, 이번 보고서는 산업생산, 과잉생산, 차별적 규제 등 비시장 정책과 관행 항목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EU, 일본 등 우방국들도 겨냥하고 있다. 이는 과잉 생산능력과 생산, 강제노동 제품의 규제 등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와 추후 통상 압박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비시장적 관행 해소 합의를 포함하는 상호무역협정(ART)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한바, 현재 양국 간 협의 중인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 외에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문제도 향후 의제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세회피 비협조 항목 신설로 우회수출 관련 압박을 강화할 것을 시사한다.

대응방향

금번 보고서는 비시장 정책, 관세회피 비협조 분야가 신설되고, 노동·환경 등 기존 지적사항이 확장되었으나 한국을 주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요 경쟁국도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당장 추가적 통상 압박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작년 미국과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우리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추진에 합의했고, 최근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관련 미국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임을 감안,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강구와 법적 검토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NTE 보고서에 기재된 분야들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대미 협상과 기업 활동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이 양자 현안을 넘어 중국발 공급과잉, 강제노동 및 관세회피 차단 등에 대한 협조 요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과 제301조 조사에 관한 여타

국가의 대응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NTE 보고서에 기재된 무역장벽 이슈들은 대체로 미업계의 민원 또는 청원을 기반으로 작성됨을 감안, 미국 내 업계 단체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1) USTR, USTR Releases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6.03.31.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march/ustr-releases-2026-national-trade-estimate-report>
- 2)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내용은 다음을 참조.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 2026.04.03. <http://www.leeko.com/news/gci/2604/gci2604.pdf>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서초,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